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0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2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영예수당 상향조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명시(안제8조)

- 월 3만원 ⇒ 월 5만원으로 인상
-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유족으로 명시

나. 조문내용 명확히 규정(안 제10조)

- 관련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수당 지급 정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“별첨”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“별첨”
- 다. 관계부서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2.10.26 ~ 11.15, 제출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- 바. 기타 : 규제심사 해당없음,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3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, “사망시에는”을 “사망 시에는 유족에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지급”을 “보상금의 지급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과 <u>사망시에는</u>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10조(수당지급의 정지 등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8조, 제39조와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8조, 제79조에 따라 <u>지급이</u>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----- ----- ----- <u>5만원</u>----- ----- - <u>사망 시에는 유족에게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수당지급의 정지 등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상</u> <u>금의 지급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><삭 제></p> |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
 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
- 관련조문
 - 안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

(단위 :원)

| 사 업 명 | 산출내역 | 예산액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계 | | 487,500,000 | |
| 보훈영예수당 지급 | 800명 × 50,000원 × 12월 | 480,000,000 | 2013년 |
| 사망위로금 지급 | 50명 × 150,000원 | 7,500,000 | |

- 연간 보훈영예수당 감소액 : 50명 × 50,000원 × 12개월 = 30,000,000원
- 연간 사망위로금 지급액 : 50명 × 150,000원 = 7,500,000원
- ⇒ 30,000,000원 - 7,500,000원 = 연간 22,500,000원 감소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군비

3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승 섭 |
| 연락처 | (033) 330 -2150 |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13년) | 2차년도 (2014년) | 3차년도 (2015년) | 4차년도 (2016년) | 5차년도 (2017년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세 출 | 487,500 | 457,500 | 427,500 | 397,500 | 367,500 | 2,137,500 |
| 보훈영예수당 | 480,000 | 450,000 | 420,000 | 390,000 | 360,000 | 2,100,000 |
| 사망위로금 | 7,500 | 7,500 | 7,500 | 7,500 | 7,500 | 37,500 |
| | | | | | | |
| 재원 조달 | 487,500 | 457,500 | 427,500 | 397,500 | 367,500 | 2,137,500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| | | | |
| | 보조금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487,500 | 457,500 | 427,500 | 397,500 | 2,137,500 |
| | 지방세 | 487,500 | 457,500 | 427,500 | 397,500 | 2,137,500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지 방 채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
| 공 기 업 특별회계 | | | | | | |
| 민간자본 | | | | | | |
| 해외자본 | | | | | | |
| 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관계법령

□ 국가보훈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② ~ ③(생략)

□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

제38조(보상의 정지)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1.~6.(생략)

②~⑤ (생략)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78조(보상의 정지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

제7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(생략)

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⑤(생략)